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0-0045050
(43) 공개일자 2010년05월03일

(51) Int. Cl.

G06Q 4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104074

(22) 출원일자 2008년10월23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2-6 대창빌딩 6층

(72) 발명자

김재형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4 한양아파트 62동 1101호

홍종철

서울 마포구 연남동 260-4

이정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한가람세경아파트 501동 6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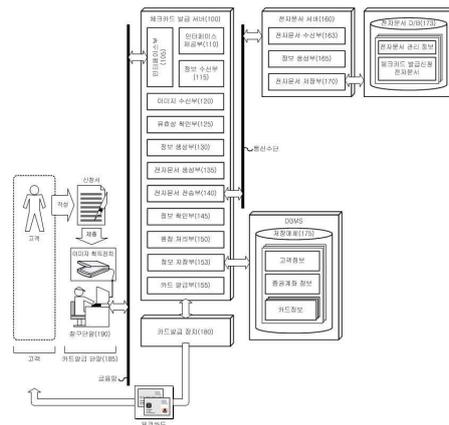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57) 요약

본 발명은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단계;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에 대한 이용권한-이용가능 일시, 이용대상, 가상계좌에 대한 모계좌의 잔액 이용한도를 하나 이상 포함-을 설정하는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이용권한 정보를 상기 체크카드와 연결된 가상계좌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

청구항 3

제 1항 내지 제 2항의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4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수단;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0022] 본 발명은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0023] 금융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상호 융합되면서 종래에 통장을 가지고 종이에 기록함으로써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전자통장을 이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024] 하지만, 상기의 카드는 하나의 증권계좌에 복수개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방법의 경우 종래부터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나, 신용카드의 특성상 증권계좌의 잔액과 무관하게 신용도만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 관계로 무분별한 지출이 증가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0025] 그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체크카드의 경우 증권계좌 하나에 하나의 체크카드만을 제공하여, 복수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복수개의 증권계좌와 체크카드를 각각 구비해야 하는 난해한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26]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수단과,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증권계좌와 연

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0027] 본 발명에 따른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28] 본 발명에 따른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은,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에 대한 이용권한-이용가능 일시, 이용대상, 가상계좌에 대한 모계좌의 잔액 이용한도를 하나 이상 포함-을 설정하는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이용권한 정보를 상기 체크카드와 연결된 가상계좌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29] 한편, 상기 전술한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 [0030]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원장과, 상기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원장이 일대일로 연결된 금융사 원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신규의 제N(N=2,3,...) 체크카드 발급이 요청되거나,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N(N=2,3,...) 체크카드 연계 계좌를 상기 증권계좌로 변경이 요청되면,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가상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기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 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N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제N 가상계좌원장을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하여 연결하고, 상기 제N 가상계좌원장에 상기 제N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N 카드원장을 부가하여 연결하는 수단과, 상기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31]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 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 [0032]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033]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0034]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0035] 도면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대면 방식의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0036]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 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 상에 구비되어 있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0037]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0038]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0039] 또한,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한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040] 이하, 본 도면1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받아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

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라고 한다.

[004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되는 청구단말(190)을 포함하는 카드발급 단말(18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004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방문하고,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창구 직원을 통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예컨대,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때 상기 고객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위해 상기 고객의 거래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3] 이후, 상기 고객이 상기 작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창구직원은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스캐닝하여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청구단말(190)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여 획득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기입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청구단말(190)은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4] 여기서, 상기 청구단말(190)은 상기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의 직원이 이용하는 금융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청구단말(190)과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서버(예컨대, 원장서버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청구단말(190)과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청구단말(190)과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5] 상기와 같은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는 이미지 획득장치와, 상기 직원이 이용하는 청구단말(190) 및 상기 청구단말(190)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0046] 본 발명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17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상기 체크카드 발급에 따른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7]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48] 상기 증권계좌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이 소유한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 중 상기 발급 요청된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계좌 중 어느 하나에 예치된 예치금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49]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기 위한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5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가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5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7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52] 본 발명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과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53]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190)인 경우,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190)과 연결된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5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105)(또는 인터페이스 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5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190)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창구단말(19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창구단말(190)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56]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18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

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120)(또는 이미지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7]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58]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059] 이후,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0] 또한,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이미지 콘텐츠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6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 구비된(또는 연계된) 소정의 저장장치에 기 저장한 경우,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저장장치에 기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콘텐츠 중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2]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함께 수신하는 것이 가능(예컨대,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상기 정보 수신부(115)에 통합되어 운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63]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125)(또는 유효성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6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5]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6]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7]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8]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69]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 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청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 상에 구비되어 있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 [0070]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부(145)(또는 정보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상에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와, 상기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될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한 후, 상기 신규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원장 처리부(150)(또는 원장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71]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정보 확인부(14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7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73] 상기 원장 처리부(150)는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상에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와, 상기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될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한 후, 상기 신규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74]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7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dots,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 $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76]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77]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78]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79]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80]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정보 생성부(130)(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카드발급 장치(180)와 연계하여 발급 처리하는 카드 발급부(155)(또는 카드 발급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81] 상기 정보 생성부(130)는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일부 생략가능)와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082]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83]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084]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85] 상기 정보 생성부(130)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발급부(155)는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086]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1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155)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087]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130)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155)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0088]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0089]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에서 전송한 상기 이미지 콘텐츠가 수신되고,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135)(또는 전자문서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140)(또는 전자문서 전송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90]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91]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2]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4]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5]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

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6]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97]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098]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4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99] 본 도면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60)와 전자문서 D/B(1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4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00]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와 상기 전자문서 D/B(173)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와 상기 전자문서 D/B(173)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01]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4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13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10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140)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에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103]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를 통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53)(또는 정보 저장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04]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53)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175)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53)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저장매체(1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153)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05]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자문서 D/B(173)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16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전자문서 수신부(163)(또는 전자문서 수신수단)와,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6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170)(또는 전자문서 저장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06]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07]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08]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0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0]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1]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2]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3] 상기 정보 생성부(16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1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16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참조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65)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6]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1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165)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117]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118]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1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0]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1]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2]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1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26] 도면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 저장된 체크카드 발급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0127]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저장매체(17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인 경우, 상기 원장D/B(200)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한 후, 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가 저장되는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2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2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2를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원장과, 상기 가상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200)에는 본 도면2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129]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0130]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131]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급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13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133] 또한, 상기 가상계좌원장은 상기 계좌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가상계좌번호, 가상계좌속성, 가상계좌 개설

일자, 모계좌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134]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가상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135]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고객 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136]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37] 상기 증권계좌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상기 고객이 소유한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 중 상기 발급 요청된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계좌 중 어느 하나에 예치된 예치금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38]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기 위한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3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40] 도면3a와 도면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141]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a와 도면3b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카드발급 단말(185)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90)이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190)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한 후,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

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 [014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a와 도면3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청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a와 도면3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43] 예컨대, 본 도면3a와 도면3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청구단말(190)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청구단말(190)에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44] 이하, 본 도면3a와 도면3b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청구단말(1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청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라고 한다.
- [0145] 도면3a와 도면3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청구단말(190)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3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3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10).
- [0146]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한다(315).
- [0147]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가 획득되면(32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콘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325).
- [0148]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매칭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330),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335).
- [0149]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340).
- [0150]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

급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345),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전송한다(350).

- [0151]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355).
- [015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53]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 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54]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55]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56]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57] 만약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358), 상기 서버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360),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 [0158] 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358),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하고(361),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362).
- [015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0] 만약,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363), 상기 서버는 상기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364), 상기 생성

된 카드원장 정보를 제1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한다(365).

- [0161] 반면,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363),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366),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367),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제N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368), 상기 연결된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369).
- [0162]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 2, \dots, 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4]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5]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6]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7]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68]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370).
- [0169]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0]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2]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3]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4]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5]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 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176]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375).
- [0177]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

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60)와 전자문서 D/B(1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78]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7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0]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1]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2]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3]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380),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처리하고(385),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한다(390).
- [0184]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5]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186]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187] 상기 서버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188]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

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0189]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0190]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0191] 도면4a와 도면4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0192]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a와 도면4b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카드발급 단말(185)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90)이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190)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한 후,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0193]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a와 도면4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4a와 도면4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0194] 예컨대, 본 도면4a와 도면4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창구단말(190)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190)에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195] 이하, 본 도면4a와 도면4b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창구단말(1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청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라고 한다.

[0196] 도면4a와 도면4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청구단말(190)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4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4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410).

[0197]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415).

[0198]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42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전송한다(425).

[0199]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430).

[020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1]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 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2]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3]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4]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5] 만약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43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

급신청에 대한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440),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0206] 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435),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하고(441),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42).

[020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08] 만약,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443), 상기 서버는 상기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444),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제1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한다(445).

[0209] 반면,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443),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446),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447),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제N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448), 상기 연결된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449).

[0210]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1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dots,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12]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13]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14]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15]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16]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450),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452).
- [0217]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한다(455).
- [0218]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가 획득되면(46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콘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465).
- [0219]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이미지 콘텐츠를 수신한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470).
- [02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21]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22]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23]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24]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25]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26]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 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227]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475).

[0228]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60)와 전자문서 D/B(1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29]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2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31]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32]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33]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34]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480),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처리하고(485),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한다(490).
- [0235]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36]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37]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38] 상기 서버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239]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240]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241]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 [0242] 도면5a와 도면5b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24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a와 도면5b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카드발급 단말(185)이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190)이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190)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로부터 획득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제공하면,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17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 [0244]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a와 도면5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5a와 도면5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45] 예컨대, 본 도면5a와 도면5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창구단말(190)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190)에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46] 이하, 본 도면5a와 도면5b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창구단말(190)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19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1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라고 한다.
- [0247] 도면5a와 도면5b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창구단말(190)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5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상기 고객이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5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510).
- [0248]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515).

- [0249]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520),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획득한다(525).
- [0250]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콘텐츠가 획득되면(53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이미지 콘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535).
- [0251]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540).
- [025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3]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12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4]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5]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6]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7] 만약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54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550),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 [0258] 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545),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하고(551),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552).
- [025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

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0] 만약,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553), 상기 서버는 상기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554),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제1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한다(555).

[0261] 반면,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553),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556),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557),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제N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558), 상기 연결된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559).

[0262]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dots,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4]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5]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6]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67]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68]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560).
- [0269]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0]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2]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3]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4]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120)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1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5]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 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276]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565).
- [0277] 상기 도면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60)와 전자문서 D/B(1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6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78]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7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전자문서 D/B(173)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0]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1]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2]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3]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570),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처리하고(575),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175)에 저장한다(580).
- [0284]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5]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86]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87] 상기 서버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288]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289]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1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290]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 [0291] 도면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0292]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으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 상에 구비되어 있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 [0293]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94]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295] 또한,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296] 이하, 본 도면6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제공받아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라고 한다.

[029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은,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카드발급 단말(685)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029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 접속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99] 여기서, 상기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냉장고,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00] 또한, 상기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및/또는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IEEE 802.11x 기반 무선랜에 연결된 무선랜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01]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서버 및/또는 무선 뱅킹 서버 및/또는 텔레 뱅킹 서버 및/또는 TV 뱅킹 서버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02]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연결하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종류에 따라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및/또는 소정의 무선 구간을 포함하

여 향 후 제안되는 모든 종류의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03]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저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04]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305] 상기와 같은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 [030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07] 상기와 같은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카드발급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 [0308] 본 발명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675)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상기 체크카드 발급에 따른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카드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09]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

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10] 상기 증권계좌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한 고객이 소유한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 중 상기 발급 요청된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계좌 중 어느 하나에 예치된 예치금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11]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기 위한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1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67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6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이거나, 및/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675)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4] 본 발명에 따른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7]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예컨대,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8]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TV 뱅킹 시스템 상의 TV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TV 뱅킹 서버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및/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및/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1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605)(또는 인터페이스 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유선 통신망 및/또는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21]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정의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0322]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032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24]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25]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0326]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IC칩 기반 뱅킹 프로그램 등)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0327]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정의된 음성통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소정의 통화로를 연결하고, 상기 음성통화 기반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28] 예컨대,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통화단말과 상기 통화로를 통해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음성인식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0329]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30]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소정의 카드발급 단말(68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에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605)와 연계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615)(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31]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에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6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3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3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34]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35]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ARS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36]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이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610)는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37]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에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610)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38] 이후,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6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605)와 연계하여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3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

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1]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342]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전송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620)(또는 유효성 확인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4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4]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5]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34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7]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8]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4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50]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51]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52]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53]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54]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부(640)(또는 정보 확인수단)와,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상에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와, 상기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될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한 후, 상기 신규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원장 처리부(645)(또는 원장 처리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55]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정보 확인부(64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5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57] 상기 원장 처리부(645)는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상에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와, 상기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될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한 후, 상기 신규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58]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5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dots,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 $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0]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1]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2]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을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을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3]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4]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정보 생성부(630)(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카드발급 장치(680)와 연계하여 발급 처리하는 카드 발급부(655)(또는 카드 발급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65] 상기 정보 생성부(630)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될 소정의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일부 생략가능)와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366]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7]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68]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69] 상기 정보 생성부(630)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카드 발급부(655)는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370]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6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655)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371]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정보 생성부(630)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카드 발급부(655)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372]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 [0373]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625)(또는 전자문서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

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635)(또는 전자문서 전송 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74]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7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76]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77]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78]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7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80]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

(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81]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82]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83]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384]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6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85] 본 도면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660)와 전자문서 D/B(6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6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386]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와 상기 전자문서 D/B(673)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와 상기 전자문서 D/B(673)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87]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635)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6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673)

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8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635)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에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389]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를 통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67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650)(또는 정보 저장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90]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65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67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매체(675)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650)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저장매체(6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저장매체(6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650)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91]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자문서 D/B(673)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66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전자문서 수신부(663)(또는 전자문서 수신수단)와,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665)(또는 정보 생성수단)와,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670)(또는 전자문서 저장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92]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393]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394]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 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95]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를(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96]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97]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98]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399]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0]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

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1] 상기 정보 생성부(66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40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66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참조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3]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665)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4]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663)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665)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40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6]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07]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08]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0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10]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11]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12]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상기 카드발급 단말(685)로부터 수신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1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

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1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1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670)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416] 도면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700)에 저장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0417]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저장매체(67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700)인 경우, 상기 원장D/B(700)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7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041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7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700)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된 계좌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등)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700)에는 본 도면7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및/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419]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0420]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421]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급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42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423] 또한, 상기 가상계좌원장은 상기 계좌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가상계좌번호, 가상계좌속성, 가상계좌 개설일자, 모계좌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0424]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가상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425]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추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426] 상기 고객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 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27] 상기 증권계좌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한 고객이 소유한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 중 상기 발급 요청된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금융계좌 중 어느 하나에 예치된 예치금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별칭,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28] 상기 카드정보는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번호(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을 처리하기 위한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29]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추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30] 도면8a와 도면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431]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a와 도면8b는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카드발급 단말(685)이 클라이언트 단말이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 가능한 웹서버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67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a와 도면8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8a와 도면8b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32] 예컨대, 본 도면8a와 도면8b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제공하는 소정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33] 이하, 본 도면8a와 도면8b에서 상기 도면6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편의상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라고 한다.

- [0434] 도면8a와 도면8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이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유선단말인 경우, TCP/IP 기반 유선 통신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무선단말인 경우, CDMA 기반(및/또는 HSDPA 기반) 이동 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등)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8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805),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810).

- [043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및/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36] 이후,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815).

- [0437]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

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820), 상기 단말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825).

[043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3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41]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442]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830).

[0443]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44]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45]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44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47]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48]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4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0]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고객 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1]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2]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3]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4] 만약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83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840),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 [0455] 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835),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하고(841),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842).
- [045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57] 만약,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843), 상기 서버는 상기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844),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제1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한다(845).
- [0458] 반면,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843),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846),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847),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제N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848), 상기 연결된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849).
- [0459]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6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dots,n)$ 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61]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62]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63]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

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64]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6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850), 상기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852).

[0466]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67]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68]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69]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70]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1]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2]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3]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4]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 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47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855).
- [0476] 상기 도면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660)와 전자문서 D/B(6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7]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7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79]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80]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81]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82]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860),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처리하고(865),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675)에 저장한다(870).
- [0483]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84]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85]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86] 상기 서버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 [0487]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488]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0489]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 [0490]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491]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는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 중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즉,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가 인터넷 뱅킹 서버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예컨대, 인터넷 등)를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 및 소정의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저장매체(675)에 저장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다른 종류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92] 즉,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또는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등)을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시,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를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 도시된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탑재되는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를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제공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493]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 도시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이외에, 텔레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과 같은 다른 뱅킹 시스템에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를 위한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텔레뱅킹 시스템 및/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및/또는 TV 뱅킹 시스템 및/또는 향후 제안되는 비대면 채널 뱅킹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 도시된 인터넷 뱅킹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0494] 이하, 본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체크카드 발급 서버(600)에 대응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 [0495] 도면9a와 도면9b와 도면9c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TCP/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면(900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

널을 연결하는데(905a), 여기서 통신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소정의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에서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입력(또는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소정의 통신세션을 할당함을 의미한다.

[049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할당할 수 있다.

[0497]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 제공하기 위해 생성(또는 추출)되는 소정의 웹페이지(예컨대, 인터넷 뱅킹 메인 페이지)에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및/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및/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한다(910a).

[049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으로 버전 정보 및/또는 최종 갱신일 정보 등을 요청함으로써,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및/또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안모듈 등)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499] 만약 상기 단말에 소정의 보안모듈을 탑재하거나, 및/또는 갱신해야 한다면(915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정의된 원격 프로그램 설치 절차에 따라 상기 단말로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전송하여 탑재 및/또는 갱신한다(920a).

[0500] 만약 상기 단말에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탑재 및/또는 갱신하거나(925a), 또는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의 탑재 및/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면(915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탑재된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활성화함으로써, 상기 단말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연결(또는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널을 보안채널로 전환)하는데(930a), 여기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중 보안성이 요구되는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를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050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보안채널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 따라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를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및/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및/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및/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

(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 [0502]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보안모듈은 상기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상기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전자서명 첨부, 및/또는 암호화, 및/또는 보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503] 상기와 같은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935a).
- [050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상기 보안채널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0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증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고, 그 결과를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인증서버는 상기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인증하는 서버이다.
- [0506]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요청에 의해 소정의 고객 인증 데이터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보안모듈을 통해 전자서명 및/또는 암호화하여 상기 서버(및/또는 인증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을 요청하고 (940a), 상기 서버(및/또는 인증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한다(945a).
- [0507] 만약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실패하면(9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대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차단함으로써(955a), 상기 단말을 통해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한다.
- [0508] 반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성공하면(9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보안모듈과 연계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로 전환하는데(960a), 여기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이라함은 상기 단말에서 상기 서버로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전송하여 등록할 수 있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 [0509] 이후, 상기 단말은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900b),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905b),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910b).
- [05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는 상기 단말에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며,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인터넷 뱅킹 고객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급한 보안카드에 인쇄된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OTP(One Time Password)(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또는 인터넷 뱅킹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OTP 인증기(또는 OTP 인증 프로그램)를 통해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11] 또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및/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처리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0512] 이후, 단말은 상기 카드발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915b).

[0513]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920b),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925b).

[051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및/또는 보안카드 정보 및/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1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1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및/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17]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0518]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930b).

- [051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및/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0]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1]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52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3]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4]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615)를 통해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6] 예컨대, 상기 유효성 확인부(620)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정보(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고객 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7]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연결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8] 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증권계좌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700)에 저장된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29] 여기서, 상기 계좌원장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고객원장을 통해 상기 고객이 소유한 금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0] 만약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935b), 상기 서버는 소정의 정보 처리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940b),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 [0531] 반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935b),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하고(941b),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에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942b).

- [053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우선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계좌원장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원장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의 잔액을 통해 거래승인을 처리하는 체크카드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3] 만약,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943b), 상기 서버는 상기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944b),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제1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한다(945b).

- [0534] 반면, 상기 확인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943b),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946b),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947b),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의 제N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948b), 상기 연결된 제N 카드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949b).

- [0535] 여기서,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상기 계좌원장과 연결된 카드원장 이외의 신규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는 것은,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증권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를 신규 생성된 카드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N(N=1,2,...,n)개의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M(M=N+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7] 또한,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요청 정보에 포함된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카드원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을 제1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에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가 생성되어 저장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8] 여기서, 상기 확인결과 제1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제1 카드원장이 없는 경우, 상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카드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39] 즉,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1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 잔액의 일부(또는 전액)를 거래승인에 이용하는 제2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상기 증권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에 상기 제2 체크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카드원장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을 생성한 후, 상기 계좌원장의 제2 카드원장으로 부가하여 연결하며, 상기 제2 카드원장 상에 상기 생성된 카드원장 정보가 포함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40] 여기서, 상기 고객이 상기 증권계좌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체크카드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설정을 요청하면, 상기 체크카드 각각에 대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증권계좌 이용권한 정보가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원장에 포함하여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41]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950c), 상기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한다(953c).
- [054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43]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44]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45]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46]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를)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47]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48]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49]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콘텐츠를 캡처(Capture)한 이미지 콘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콘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콘텐츠)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콘텐츠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50]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및/또는 소정의 문서 파일 형식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및/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0551]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955c).
- [0552] 상기 도면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660)와 전자문서 D/B(673)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66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53]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55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전자문서 D/B(673)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55]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56]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57]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및/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및/또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58]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문서가 저장되면(960c), 상기 서버는 상기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정보, 증권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처리하고(965c), 상기 체크카드 발급 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675)에 저장한다(970c).
- [0559] 예컨대, 상기 카드번호는(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4자리의 카드발급기관 번호와 2자리의 카드종류 번호와 9자리의 일련번호 및 하나의 체크디지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60] 상기 유효기간 정보는 상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또는 만료일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체크카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0561] 상기 카드발급기관 정보(또는 코드)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발급기관(또는 금융사)에 할당된 고유번호(또는 고유코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62] 상기 서버에 의해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소정의 카드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서버는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를 제작(또는 상기 체크카드에 상기 카드정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또는 배송)된다.

[0563] 만약 상기 체크카드가 MS(Magnetic Stripe)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예컨대, 트랙I, 트랙II, 트랙III)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카드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MS 트랙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0564] 또는, 상기 체크카드가 IC(Integrated Circuit)카드라면,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는 상기 체크카드의 IC칩에 구비된 메모리에 상기 카드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서버는 상기 IC칩에 구비된 COS(Chip Operating System)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일 구조로 상기 카드정보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발급 장치(680)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를 상기 IC칩의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발급할 소정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0565] 상기와 같이 제작된 체크카드는 상기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카드 제공 절차에 따라 상기 고객에게 배송된다.

발명의 효과

[0566]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증권계좌를 기반으로 복수개의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카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0567] 예를 들면,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미리 체크카드별 용도를 자신이 정한 후, 결제를 하게될 경우, 통장에 인자되는 내역을 확인하면 체크카드가 언제 이용되었는지만을 확인함으로써, 체크카드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0568]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개의 체크카드를 하나의 계좌를 기반으로 이용함으로써, 각각의 계좌에 분산하여 예치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기반으로 복수개의 체크카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0569]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개의 체크카드를 하나의 결제계좌로 연결시, 각각의 체크카드에 가상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카드사용 관리/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대면 방식의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0002]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에 저장된 체크카드 발급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0003] 도 3a와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0004]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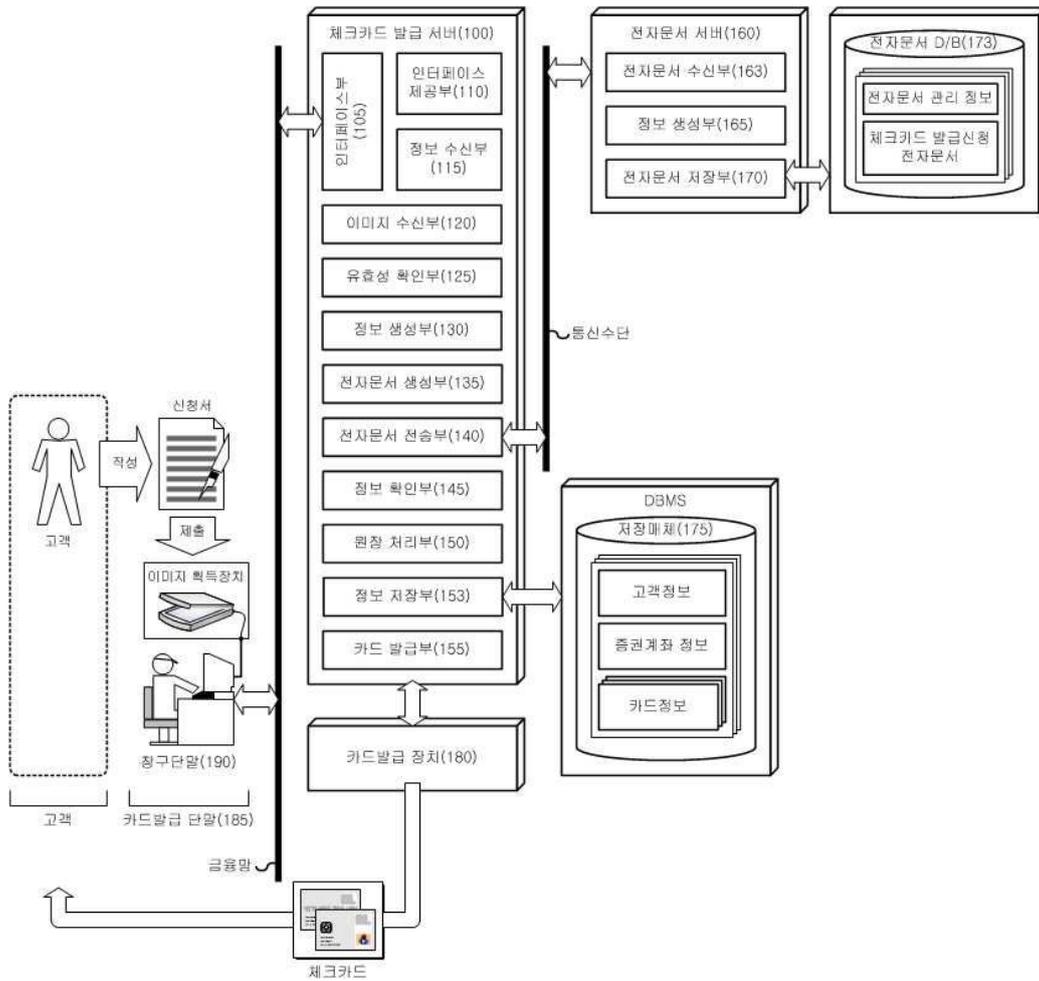
- [0005] 도 5a와 도 5b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006]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0007]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에 저장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0008] 도 8a와 도 8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0009] 도 9a와 도 9b와 도 9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단일 증권계좌와 연계된 복수 체크카드 별 가상계좌 운영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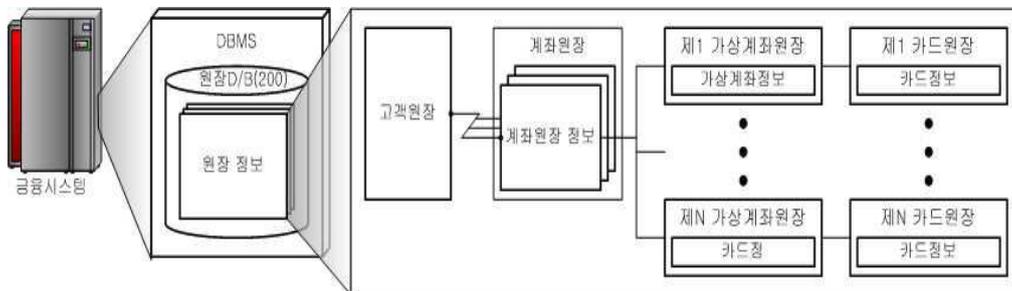
- | | | |
|--------|-------------------|----------------|
| [0010]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 |
| [0011] | 100 : 체크카드 발급 서버 | 105 : 인터페이부 |
| [0012] | 110 : 인터페이스 제공부 | 115 : 정보 수신부 |
| [0013] | 120 : 이미지 수신부 | 125 : 유효성 확인부 |
| [0014] | 130 : 정보 생성부 | 135 : 전자문서 생성부 |
| [0015] | 140 : 전자문서 전송부 | 145 : 정보 확인부 |
| [0016] | 150 : 원장 처리부 | 153 : 정보 저장부 |
| [0017] | 155 : 카드 발급부 | 160 : 전자문서 서버 |
| [0018] | 163 : 전자문서 수신부 | 165 : 정보 생성부 |
| [0019] | 170 : 전자문서 저장부 | 173 : 전자문서 D/B |
| [0020] | 175 : 저장매체 | 180 : 카드발급 장치 |
| [0021] | 185 : 카드발급 단말 | 190 : 창구단말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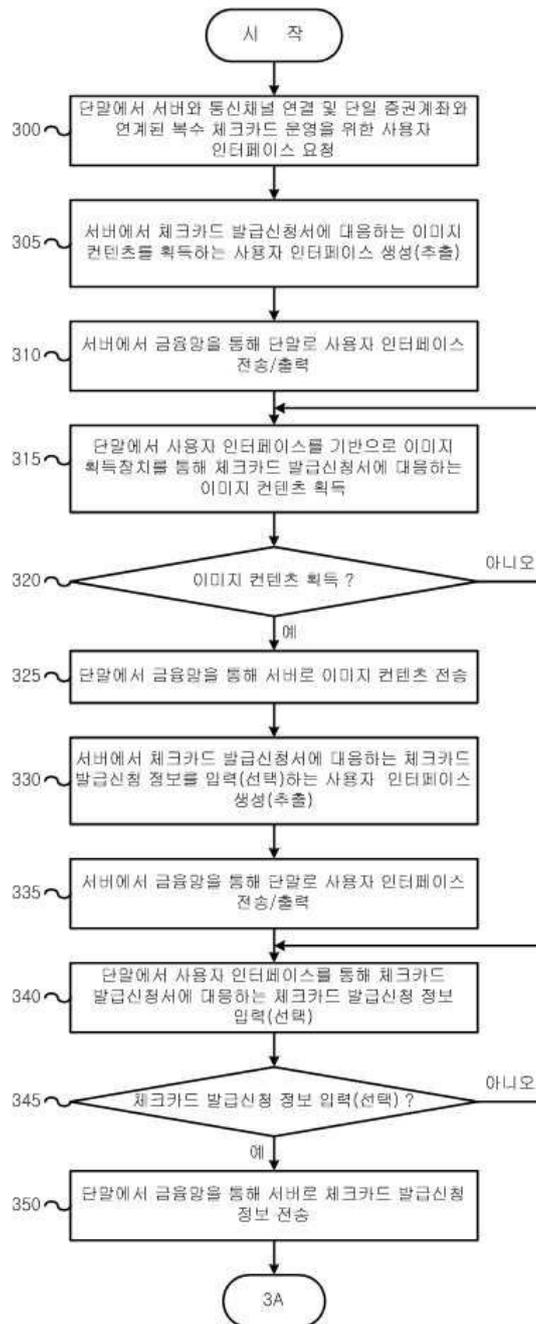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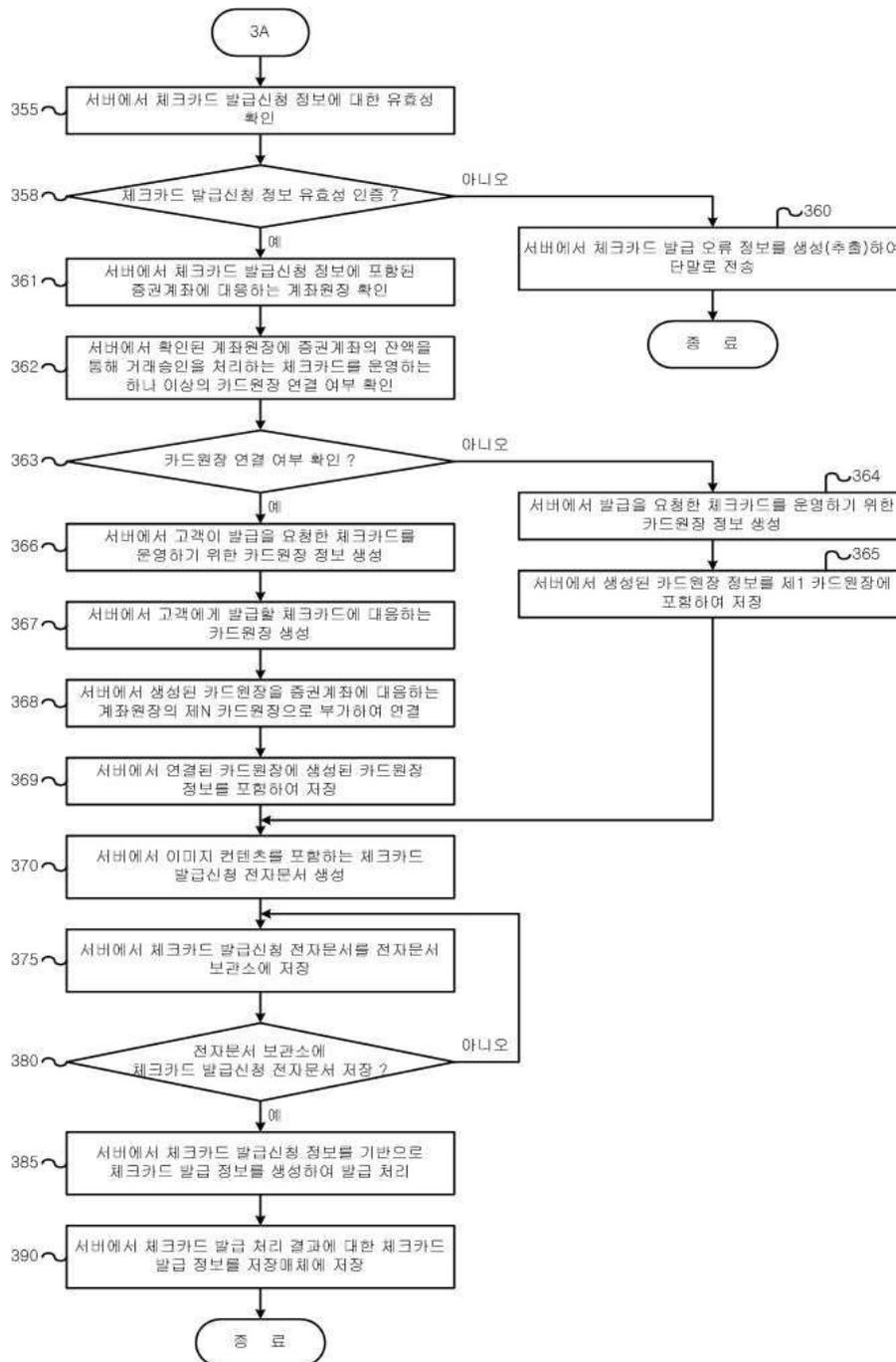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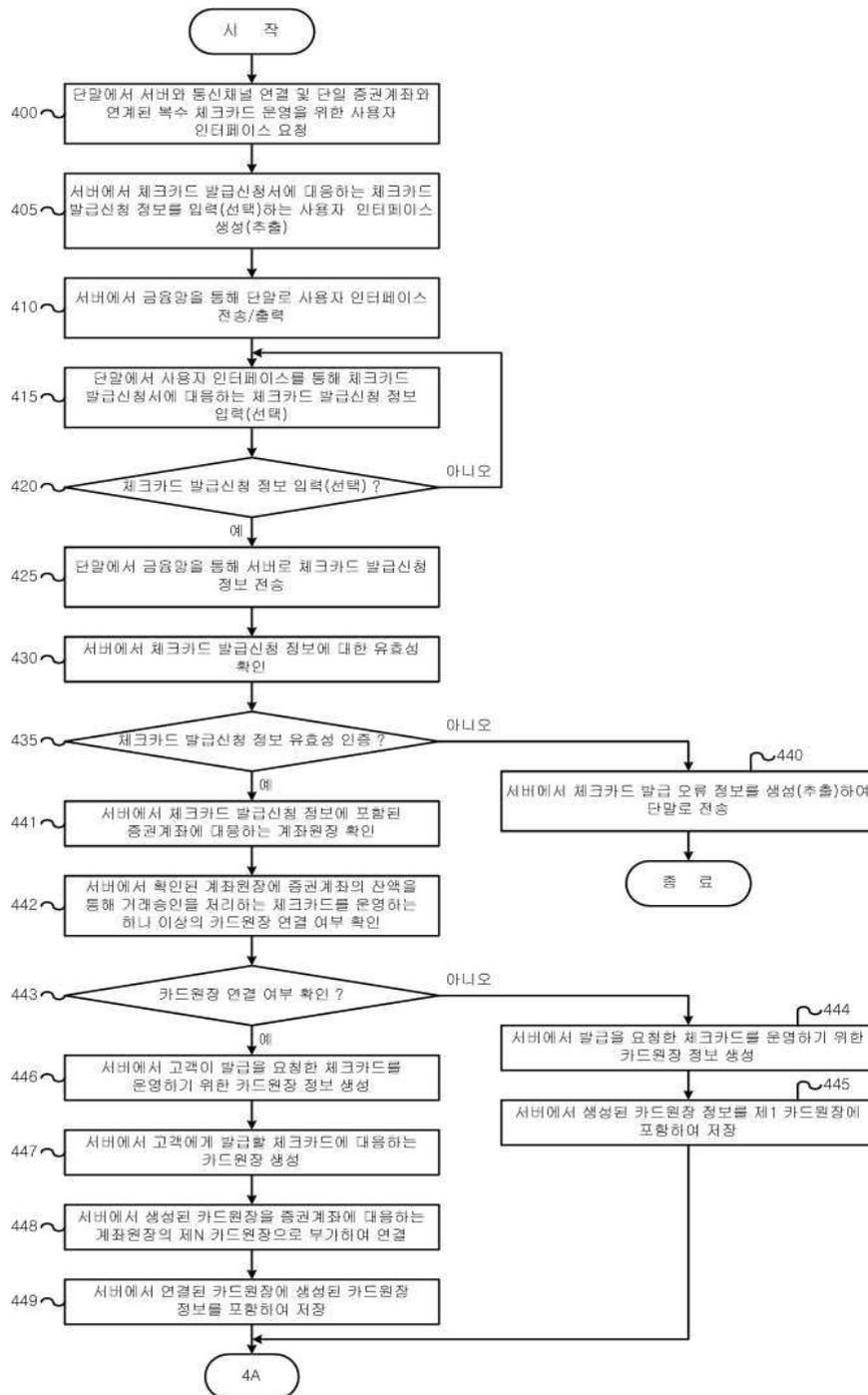
도면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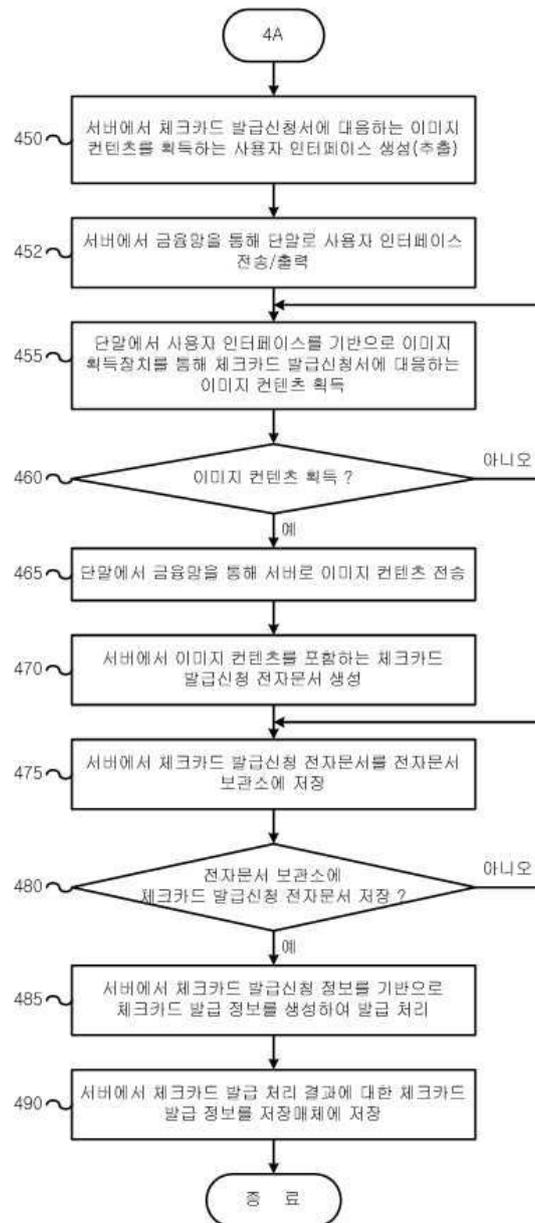
도면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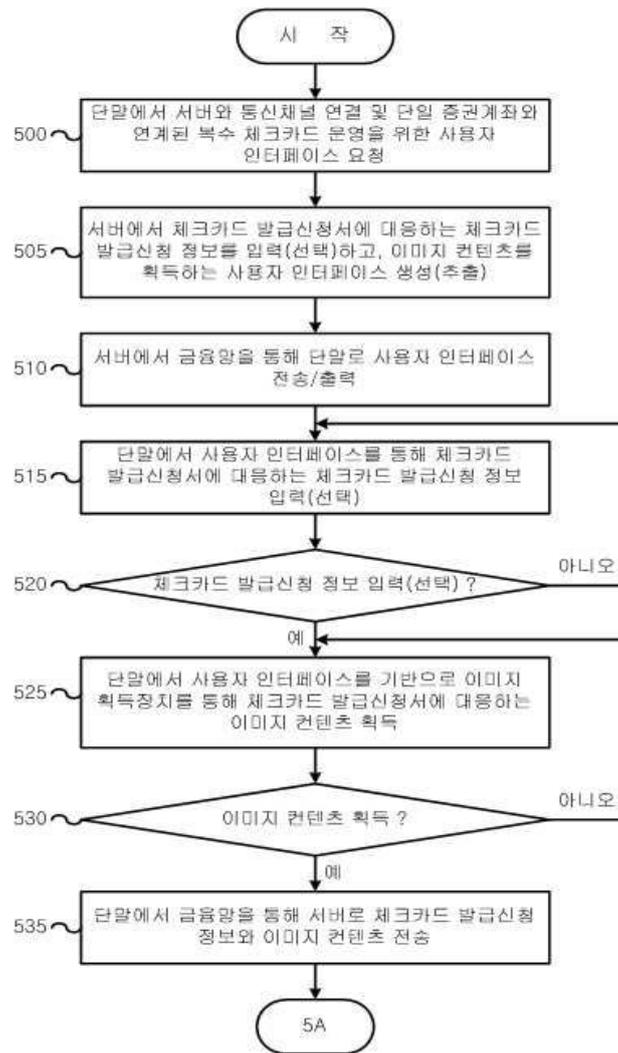
도면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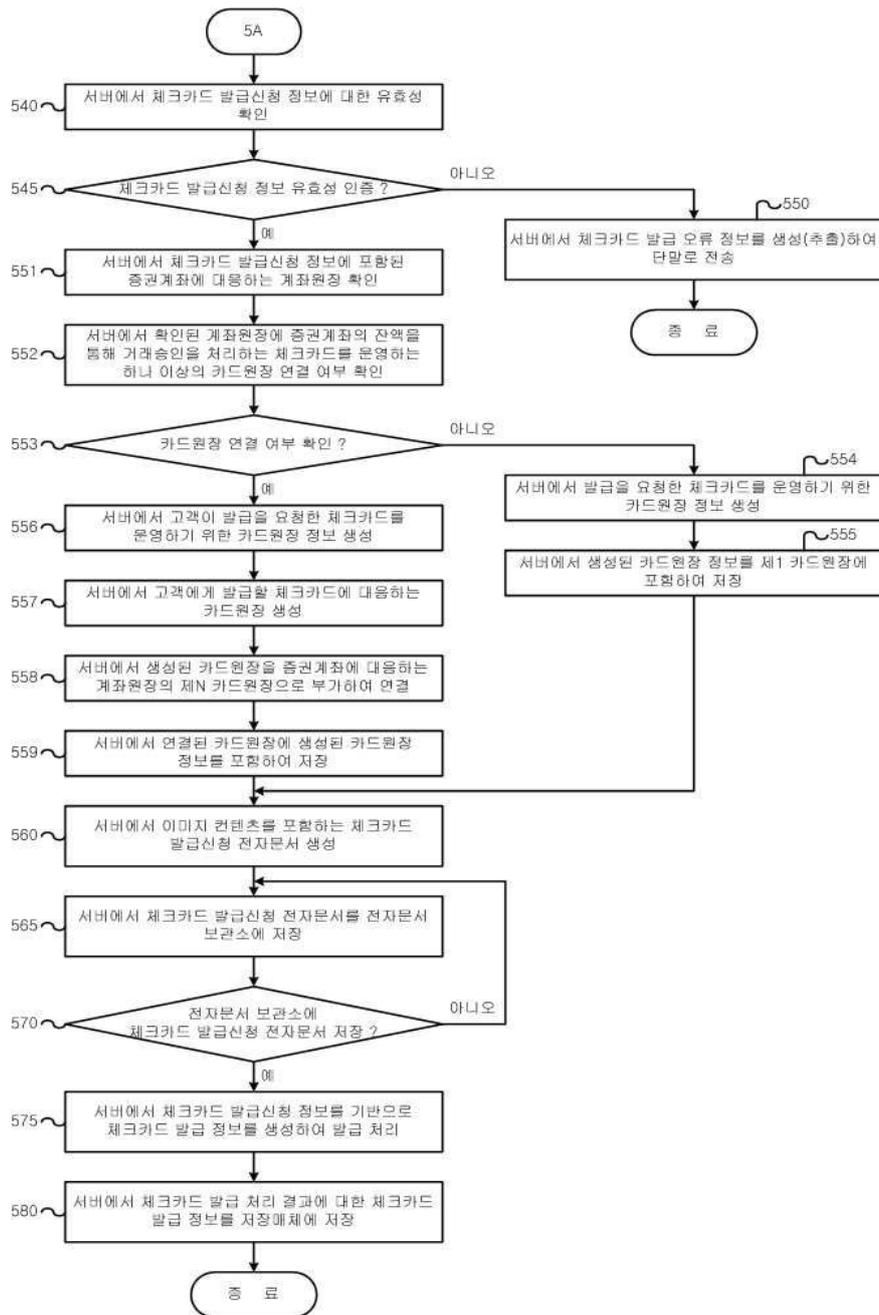
도면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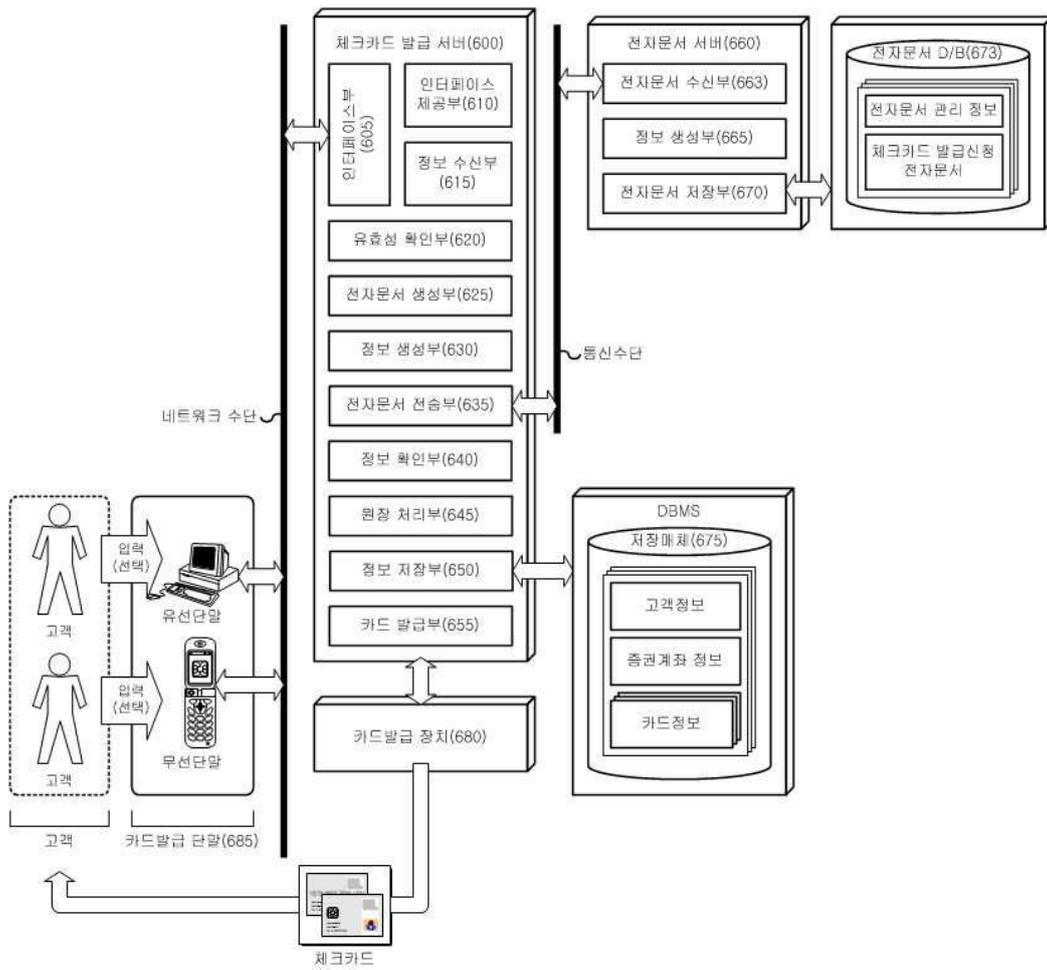
도면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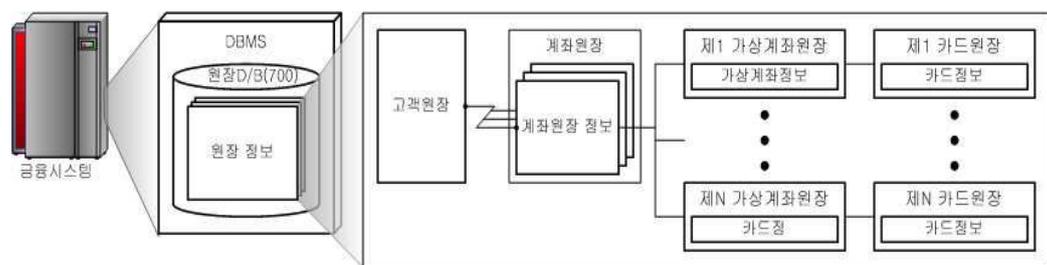
도면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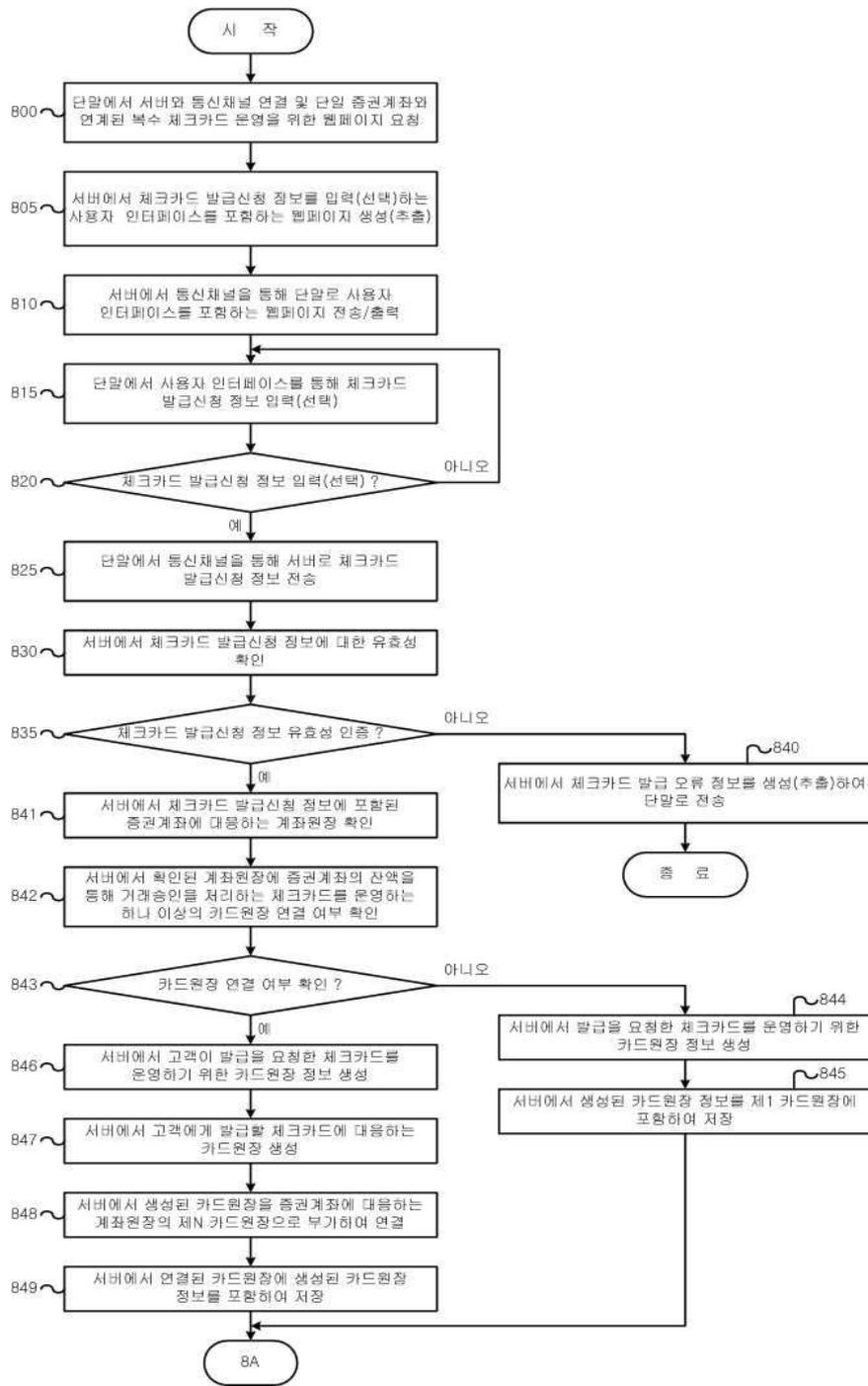
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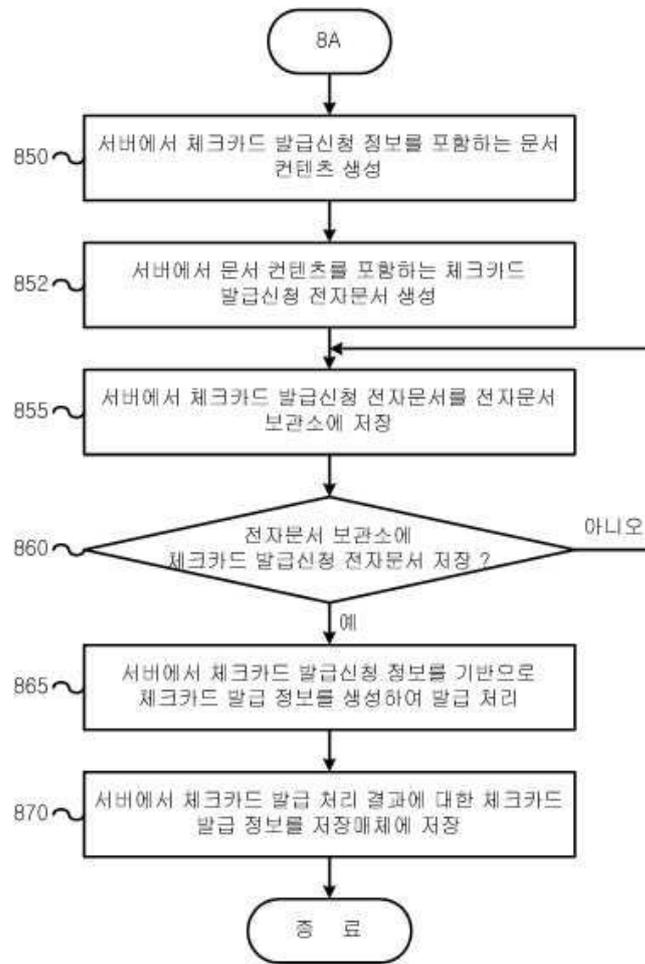
도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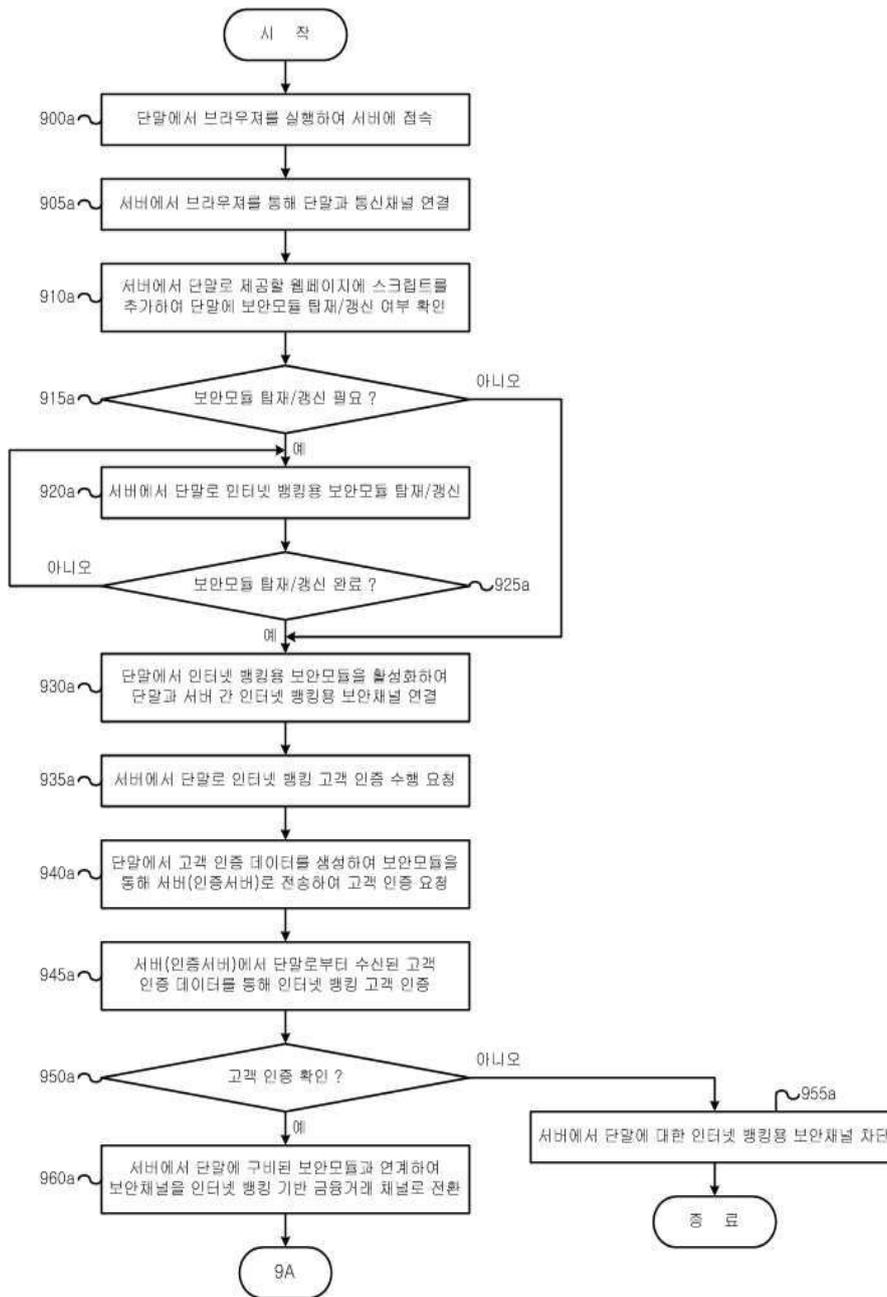
도면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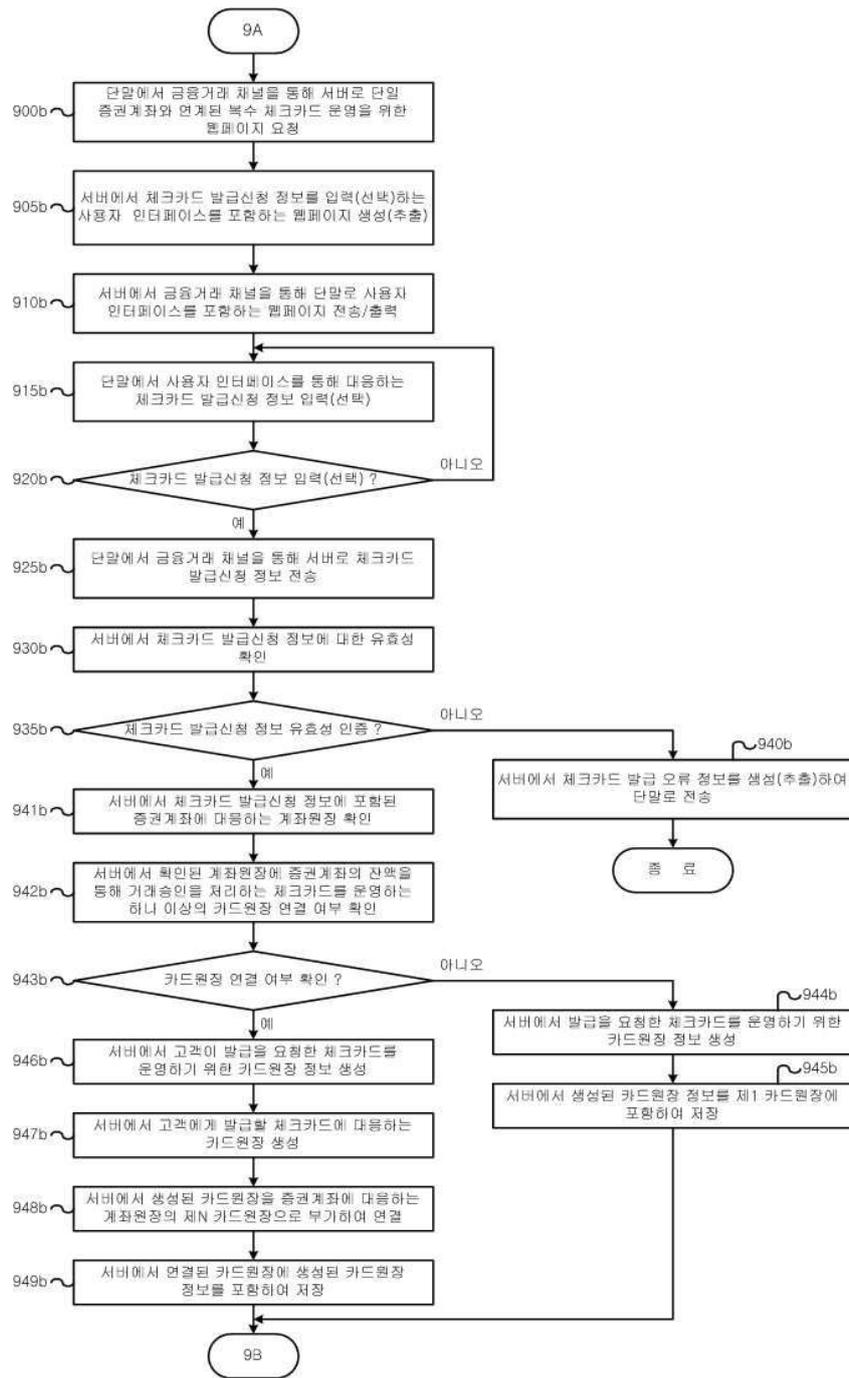
도면8b



도면9a



도면9b



도면9c

